

제6회 지부회장회의

## 제9회 理事會 개최

'90 제9회 理事會가 宋基德 회장 주재로 지난 9월10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제25회 정기총회 개최일자 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협의의 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25회 정기총회 개최일자 및 장소 결정  
-1990. 11. 28(수) 오전10시에 개최기로 하고 장소는 추후 결정기로 함
-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연구에 관한 협의
- 좀더 검토하여 추후 재협의기로 함
- ◆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관한 협의
- 본 협회의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대한 건의서(안) 내용에 대하여 일부 문안을 재검토 후 작성기로 함
- ◆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
- 건축법개정(안)은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본 협회 의견이 대부분 반영 되어진 바 원안대로 추진기로 함

## 제6회 市道支部會長會議

제6회 지부회장회의가 지난 21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종합건설업면허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관한

- 협의
- 대책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극 대처기로 함
- ◆ 건축법 개정(안) 조정에 관한 협의
- 중간검사 문항의 삭제와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 규모의 상향 조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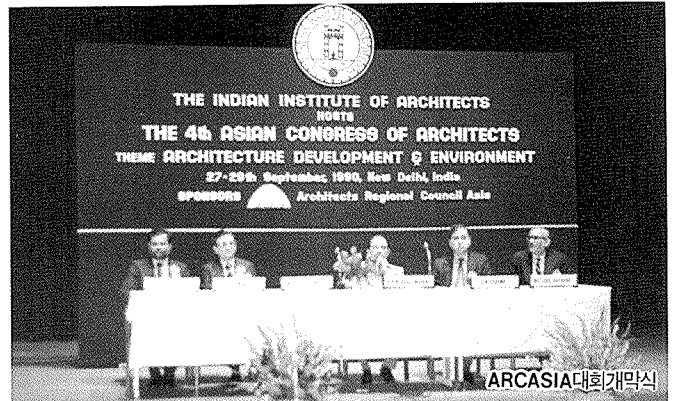
## 제4차 ARCASIA대회 대표단 파견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회원국간의 단합과 우의 증진 및 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제4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지난 27일부터 2일까지 불교의 성지인 인도에서 개최되었다.

매 짝수년도에 개최되어 4회째를 맞는 금번 ARCASIA 대회는 '건축과 환경'이라는 주제

아래 12개 회원국에서 대표를 파견하였다.

本協會는 ARCASIA 理事國으로서 宋基德회장을 비롯하여 국제위원회 김지덕위원장, 이정근간사, 전봉수위원, 학생대표 2명등 공식 대표단 6명과 이영희 서울지부 회장을 비롯한 참관단 16명으로 구성된 총 22명의 대표단을 동 대회에 파견하였다.



## 수재의연금 기탁

-침수가옥 무료 안전진단 활동도 벌여-

本協會는 서울·경기지역을 엄습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 회원이 모금활동을 벌여 관계기관에 수재의연금을 기탁하였다.

지난 9월13일, 宋基德회장은 東亞日報社에 전국 회원 및 직원일동이 모금한 3천4백42만9천원을 기탁하였으며, 京畿지부(회장 李一潤)는 지난 18일 모금액 4백만원을 京仁日報社에 기탁하는 한편 각분소등에서 모두 3천2백만원의 성금을 조성, 관계기관에 기탁하였다.

또한 齊州지부(회장 李世院)도 齊民日報社에 지난 28일 성금모금액 1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각시도지부별로도 성금 모금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호우피해가 집중되었던 서울지부(회장 李永熙)는 지난 14~16일 3일동안 전 소속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동, 풍납동등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건축물 무료안전진단을 실시, 침수가옥 1만9천5백28동등 총 1만9천6백51건의 무료 안전진단활동을 펼쳤다.

## 건설부, 建築法 改定 최종案 확정

—本協會 의견 대체로 반영돼—

建築法 개정案이 지난 7월2일 입법예고(本誌 9007호 參照)되어 本協會 주관하에 회원 및 공무원, 교수,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바, 운영상 현실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본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들은 본 협회와 건설부의 Task Force Team 운영과 간담회 개최등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 건설부 최종안이 확정,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本協會에서는 그동안 建築法 개정에 있어 본협회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온 바, 지난 17일 건설부에서 작성한 제정안을 바탕으로 긴급임원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선 건의안을 재제출하는 한편 20일에는 鄭淳虎부회장과 任仁赫사무처장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조정을 하였으며, 21일에는 긴급이사회를 개최, 본협회 건의안의 관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한 바 있다.

건설부 최종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예고 안에서 개정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 예고안 제27조 대형건축물의 사전예고항을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시장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전심의제로 변경함 (제10조)
- ◆ 공사중 일정 범위의 경미한 설계변경등은 사용승인검사 시 일괄하여 처리토록 함 (제14조)

- ◆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 일괄 처리되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가장구의 일원화를 추진함 (제10조, 제11조, 제23조)
- ◆ 예고안 제18조 공사의 감리조항은 감리자가 공사중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시 건축주·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통보하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함 (제18조)
- ◆ 시공중 수반되는 오차의 허용범위를 설정함 (제20조)
- ◆ 예고안 제24조의 허가 및 사용승인등의 민간기관 위임등에 대한 조항은 건축사협회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함 (제24조)
- ◆ 예고안 31조의 건축감시원조항은 시·도 건축직공무원으로 건축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업무범위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함 (제30조)
- ◆ 예고안 제69조 공개공지의 확보 조항을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을 설치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폐율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함 (제68조)
- ◆ 현장조사 및 검사자는 급품수수, 알선등으로 인한 형법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현장조사 및 검사자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 (제74조)
- ◆ 예고안 제75조의 벌칙조항중

제6항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위반하게 실시한 자」를 삭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5조), 예고안 제76조의 벌칙조항에서 제3항의 공사감리자는 제외토록 변경함 (제76조)

-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제80조)
- ◆ 예고안 제19조 소규모건축물의 시공자 등록조항은 건설법 개정시 반영키로 하고 삭제함



전남지부 해외연수단

## 全羅南道支部(會長 金仁模)

### 회원 해외연수 실시

全南지부(회장 金仁模)는 지난 8월14일부터 9월2일까지 20일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유럽 8개국의 건축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회원 해외연수를 실

시하였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김광호부회장등 지부 소속 회원 16명이 참가하였다.

## 木材 이용에 관한 세미나

全美목재협회(NEPA)와 美서부지역 목재협회(WWPA)는 한국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미국 목재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기술의 건축에의 응용 및 확대보급등을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5일 한국대표사무소 개설 기념 리셉션에 이어 16일(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 볼룸)과 19일(한국종합전시시장 국제회의실)

개최될 이번 세미나는 “미국산 침엽수목, 그 오늘과 전망”이라는 주제아래, ‘건축과 건축재료서의 목재이용 현황’ 및 ‘목구조 주택과 건축법과의 문제’, ‘건축목재 현황 및 주택모형 선호도’등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으로 무료로 일반에 공개된다.

(문의는 全美목재협회 한국대표사무소 569-2598)